

제1863호

2022. 4. 28.(목)

발행인 : 영등포구청장
편집인 : 홍보미디어과장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
전화 : 02-2670-7561

영등포구보

고 시

- 제2022-75호 양남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(경미한)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
- 제2022-79호 도로명주소 부여, 폐지 고시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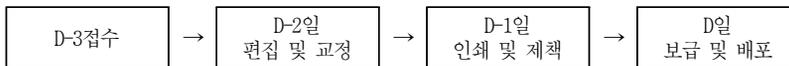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<<http://www.ydp.go.kr>(영등포소식→새소식→영등포구보)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◎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(☎ 02-2670-7561 / 전송: 02-2670-3581)

◎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(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,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)

◎ 구보게재접수는 D-3일(월요일)까지 접수



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

3180244-0034-2022

고 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-75호

**양남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(경미한)변경 승인 및
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14호(2010.04.01.)로 시장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제 2012-329호(2012.11.29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제 2015-318호(2015.10.15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19-34호(2019.02.21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(경미한)변경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-111호(2020.06.04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(경미한)변경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22-44호(2022.01.27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양남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추진계획을 (경미한)변경 승인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28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- 1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
- 가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(변경없음) : 양남시장정비구역
- 나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(변경없음)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기 정	양남시장정비구역	영등포구 양평동1가 30번지	1,956.7	

- 다.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 : 양남시장정비사업조합서울주택도시공사
- 라.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일 : (경미한) 변경 승인 고시일
- 마. 사업추진계획
 - 1)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 - 2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 - 3)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(변경없음)

4) 건축시설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분	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높이·층수 (지상/지하)	용도	비고
기정	1,956.7	68.448	391.283	13,388.5247	42.00m 이하 (12층/지하4층)	공동주택,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※판매시설면적 3,024.3375㎡	
변경	1,956.7	68.5452	398.6892	13,605.381	42.00m 이하 (12층/지하4층)	공동주택,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※판매시설면적 3,042.0043㎡	

5) 건축물의 배치·형태 등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6)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7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(변경)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공동주택 공급계획	분양(조합원, 일반) 3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8세대	분양(조합원, 일반) 5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9세대	

※ 추후 조합원 분양신청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각 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바. 입점상인 보호대책(변경없음)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

2. 사업추진계획 (경미한) 변경 사유

- 양남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건축 계획내용 반영

3. 관계서류 열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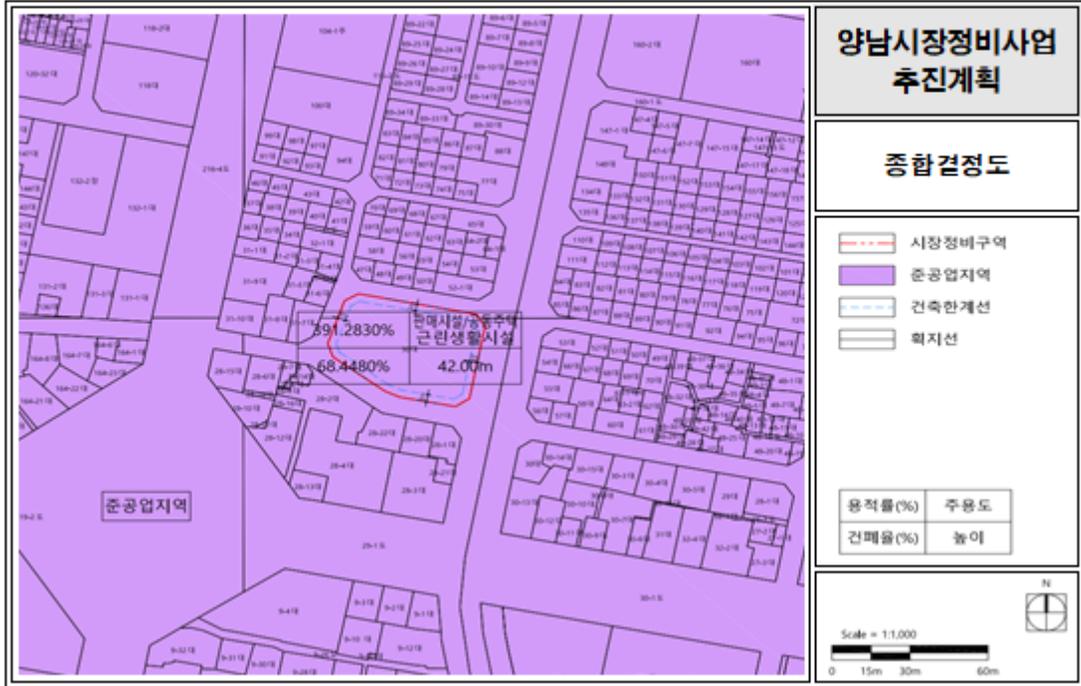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(☎02-2670-3428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- 따로 붙임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(지형도면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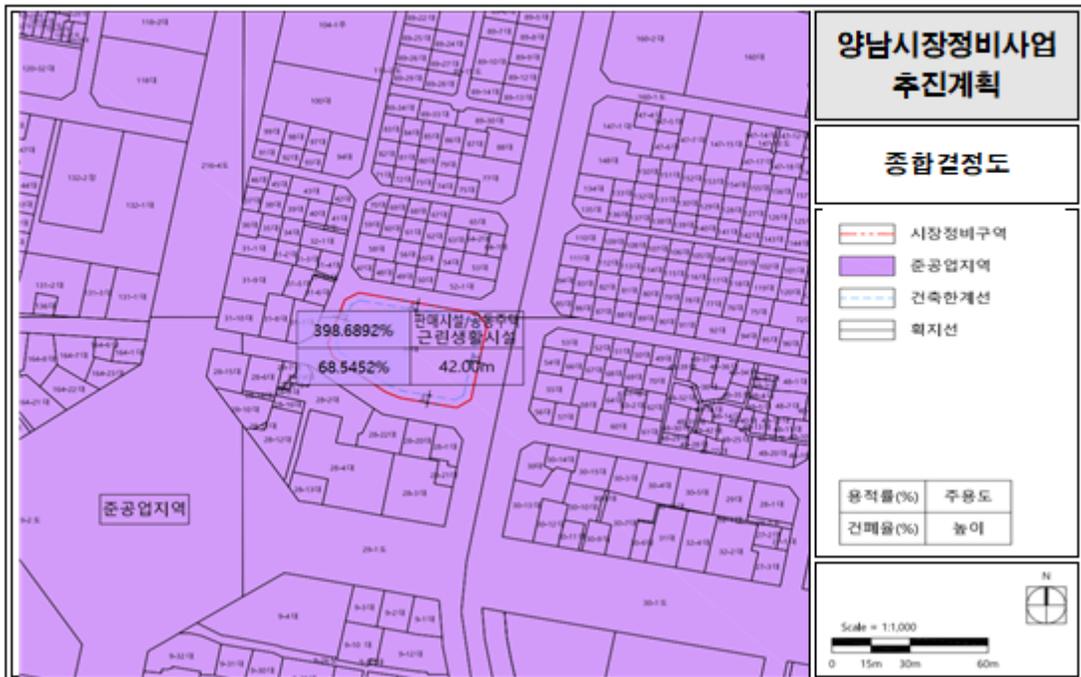
- 사업추진계획은 향후 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관계도면

[시장정비구역 종합결정도 : 기정]



[시장정비구역 종합결정도 : 변경]

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22-79호

도로명주소 부여, 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,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28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73 (양평동3가) 외 10건

(별지참조)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(☎2670-3722)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 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 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제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 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,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참고사항
 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 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■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이동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1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7-6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2가길 4 (당산동6가)	2022-04-28	신규부여	2010-05-27	양평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	

■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고시일	비고
1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25가길 20-2 (신길동)	2022-04-25	2022-04-28	
2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61 (신길동)	2022-04-25	2022-04-28	
3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40길 3-1 (대림동)	2022-04-25	2022-04-28	
4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1길 14 (대림동)	2022-04-25	2022-04-28	
5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73 (영등포동2가)	2022-04-25	2022-04-28	
6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2길 5-2 (신길동)	2022-04-25	2022-04-28	
7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2길 7 (신길동)	2022-04-25	2022-04-28	
8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73 (양평동3가)	2022-04-25	2022-04-28	
9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2 (양평동5가)	2022-04-25	2022-04-28	
1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3길 6 (당산동1가)	2022-04-25	2022-04-28	